

광주고등법원 2023. 3. 29 선고 2022나219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 2023. 3. 29 선고 2022나21919 판결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5. 17 선고 2019가합1047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길

담당변호사 문정현, 노사육

피고, 항소인 1. 유한회사 B

2. 유한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

담당변호사 오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

3. D

4. E

5. F 주식회사

피고 1, 3, 4,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

변론종결 2023. 3. 8.

판결선고 2023. 3. 29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5. 17. 선고 2019가합10472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,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 유한회사 B, 유한회사 C, D,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,657,526원 및 그 중 54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0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, 유한회사 C, D,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, 유한회사 C, D,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/20은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 유한회사 B, 유한회사 C, D,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,617,000원 및 그 중 54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0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유한회사 B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전남 무안군 G 대 1977.3㎡에 관하여 2017. 3. 24. 체결된 신탁계약을 811,617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(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가. 피고 유한회사 C, E

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나. 피고 유한회사 B, D, F 주식회사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5. 결론 부분 제외).

[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]

-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변제충당계산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변제충당계산표로 교체한다.
- 제1심판결 6쪽 2행의 “P교회”를 “Z교회(이하 ‘이 사건 교회’라 한다)”로 고쳐 쓴다.○ 제1심판결 6쪽 8행의 “피고 B 소유의”를 “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7쪽 하3행의 “갑 제2호증”을 “갑 제2, 10호증”으로 고쳐 쓴다.○ 제1심판결 7쪽 하2행의 “2017. 4. 24.부터 2019. 2. 23.까지 피고 E으로부터”를 “2016. 10. 24.부터 2019. 2. 23.까지 피고 B 및 E으로부터”로 고쳐 쓴다.○ 제1심판결 8쪽 하4행부터 하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811,617,001원(= 2017. 9. 23. 변제해야 할 원리금 540,000,000원 + 위 540,000,000원에 대한 2017. 9. 24. 이후의 지연손해금 271,617,001원)이다. 따라서 피고 B, C, D,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11,617,001원 및 그 중 540,000,000원에 대한 2021. 10. 24.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취지에서 위 811,617,001원에서 1원을 버린 811,617,000원만을 구하고 있다).』

- 제1심판결 10쪽 5행의 “있었던 점” 다음에 “(특히 피고 D의 인감증명서는 피고 B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된 2016. 8. 24.과 같은 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다)”를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11쪽 하8행의 “하지 않은 점”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, ⑤ 피고 E은 자신 또는 피고 B 명의로 2016. 10. 24.을 시작으로 매월 23일을 전후하여 원고에게

5,000,000원씩을 송금하였는데, 이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변제방법과 부합하는바,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 500,000,000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B 또는 E만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 명목의 변제 의무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』

○ 제1심판결 12쪽 2행의 “2016. 10. 23.부터 2017. 9. 23.까지의”를 “2016. 10.분부터 2017. 9.분까지 12회분의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12쪽 5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9. 24. 이후의 지연손해금(다만, 원고는 2021. 10. 23.을 기준으로 위 기간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하여 특정 금액을, 그 다음날부터는 약정이율로 계산되는 금액을 구하고 있다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○ 제1심판결 12쪽 9행을 “다. 피고 B, D의 분할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”으로 고쳐 쓰고, 10행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13쪽 4행부터 하5행까지를 삭제하고, 하4행을 “라. 피고 C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14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마. 피고들의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 피고 E이 2017. 9. 23. 이후에 총 17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85,000,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 E이 2017. 11. 1.부터 2019. 2. 23.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‘변제일’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5,000,000원씩 합계 80,000,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원고가 일부 자인하고 있다(피고들이 주장하는 2017. 9. 26.자 5,000,000원은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2017. 9.분 이자이고, 원고가 2017. 11. 1. 이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75,000,000원은 2018. 4. 23.자 변제액 5,000,000원이 누락된 것이다).

다만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위 변제금을 원본,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

우선하여 총당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,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총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, 원본의 순서로 변제총당되어야 한다.

피고 E의 위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법정변제총당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변제총당계산표의 기재와 같고, 그 결과 2019. 2. 23.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원리금 540,000,000원과 지연손해금 34,953,417원이 남는다.

피고들의 일부 변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』

○ 제1심판결 14쪽 9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(각주 삭제 포함).

『바. 소결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. 10. 23.자 기준 대여원리금 790,657,526원[= 원리금 540,000,000원 + 2019. 2. 23.자 기준 지연손해금 34,953,417원 + 2019. 2. 24.부터 2021. 10. 23.까지의 지연손해금 215,704,109원{= 540,000,000원 × 15% × (2 + 242/365)}, 원 미만 버림] 및 그 중 54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0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○ 제1심판결 15쪽 4행의 “749,250,000원”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15쪽 6행부터 18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나. 판단

1) 추가 인정사실

가) 이 사건 교회는 2011. 10. 7.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) 이 사건 교회는 2011년경 담임목사의 정년 문제로 소속 교단과 마찰이 발생한 이래, 두 교단[AA총회, 사단법인 AB]에의 탈퇴 및 가입, 신임 담임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분열과 법적인 분쟁이 이어져 왔다.

다)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2013. 11.경 당시 담임목사인 AC(소속 교단 : 사단법인 AB)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(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호), 위 법원은 2014. 2. 9. AC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AA총회 소속 목사인 AD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.

라) AA총회는 2015. 2. 13. AD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, 2015. 12. 7. AE을 임시목사로 임명하였다. 이후 AD은 2015. 12. 13. AE에게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후 2016. 8. 14. AE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다. 위 공동의회에서 AE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, AA총회는 2016. 8. 16. AE을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다.

마)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A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(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합1051호), 위 법원은 2017. 5. 29. 'AE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'는 등의 이유로 AE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.

바) 한편, AE은 2016. 8. 20. 이 사건 교회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16. 9. 7.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앞서 든 증거들, 을가 제7,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2) 구체적 판단가) 위 추가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 가처분결정에 따라 AD이 이 사건 교회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었고, 당시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상태도 아니었던 이상, AE이 적법하게 이 사건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AD이 아닌 AE에게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, ② AD이 2015. 12. 13.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AE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와 같은 권한 위임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할 수 없고,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권한 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E에게 이 사건 교회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,1)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라거나 사후에 추인됨으로써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나)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,

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).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,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,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, C, D,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며,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,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창한, 판사 김준영, 판사 고준홍

[별지]

변제충당계산표

채권명	채권발행일	채권액(원)	이행기	최초 기산일	연 이율(%)	적용시기	적용 범위					
다국채	2018.09.22	540,000,000	2017.09.24	2017.09.24	15	2017.09.24	이자제한법					
▶ 총당 정보												
연계일	연채액	원금(원)	적용 이율(%)	시작일	종료일	발생 이자 누적액	이자 순취	총당 순취	이자 총당	원금 총당	원금 잔액	이자 잔액
2017.11.01	5,000,000	540,000,000	15	2017.09.24	2017.11.01	8,654,794	8,654,794	1	5,000,000	0	540,000,000	3,654,794
2017.11.24	5,000,000	540,000,000	15	2017.11.22	2017.11.24	5,104,109	8,758,903	1	5,000,000	0	540,000,000	3,758,903
2017.12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7.11.25	2017.12.23	6,426,616	12,194,519	1	5,000,000	0	540,000,000	6,194,519
2018.01.24	5,000,000	540,000,000	15	2017.12.24	2018.01.24	7,101,369	12,296,888	1	5,000,000	0	540,000,000	7,296,888
2018.02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1.25	2018.02.23	6,867,534	13,963,422	1	5,000,000	0	540,000,000	8,963,422
2018.03.26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2.24	2018.03.26	8,879,482	15,832,874	1	5,000,000	0	540,000,000	10,832,874
2018.04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3.27	2018.04.23	6,213,698	17,046,572	1	5,000,000	0	540,000,000	12,046,572
2018.05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4.24	2018.05.23	6,867,534	18,704,106	1	5,000,000	0	540,000,000	13,704,106
2018.07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6.24	2018.07.23	13,536,986	21,241,092	1	5,000,000	0	540,000,000	21,241,092
2018.08.07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7.24	2018.08.07	3,328,787	25,569,879	1	5,000,000	0	540,000,000	23,569,879
2018.08.24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8.08	2018.08.24	3,772,602	29,342,481	1	5,000,000	0	540,000,000	25,342,481
2018.09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8.26	2018.09.23	6,867,534	25,999,995	1	5,000,000	0	540,000,000	23,999,995
2018.10.26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09.24	2018.10.26	7,323,287	28,323,282	1	5,000,000	0	540,000,000	23,323,282
2018.11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10.27	2018.11.23	6,213,698	29,636,980	1	5,000,000	0	540,000,000	24,636,980
2019.01.22	5,000,000	540,000,000	15	2018.11.24	2019.01.22	13,315,088	37,862,048	1	5,000,000	0	540,000,000	32,862,048
2019.02.23	5,000,000	540,000,000	15	2019.01.23	2019.02.23	7,101,369	39,963,417	1	5,000,000	0	540,000,000	34,963,417
▶ 발생이자 계산근거												
연계일	계산 근거											
2017.11.01	540,000,000 × (0.15 × (39 ÷ 365)) 【2017.09.24 ~ 2017.11.01 (15%)】											
2017.11.24	540,000,000 × (0.15 × (29 ÷ 365)) 【2017.11.02 ~ 2017.11.24 (15%)】											
2017.12.23	540,000,000 × (0.15 × (29 ÷ 365)) 【2017.11.25 ~ 2017.12.23 (15%)】											
2018.01.24	540,000,000 × (0.15 × (32 ÷ 365)) 【2017.12.24 ~ 2018.01.24 (15%)】											
2018.02.23	540,000,000 × (0.15 × (30 ÷ 365)) 【2018.01.25 ~ 2018.02.23 (15%)】											
2018.03.26	540,000,000 × (0.15 × (31 ÷ 365)) 【2018.02.24 ~ 2018.03.26 (15%)】											
2018.04.23	540,000,000 × (0.15 × (38 ÷ 365)) 【2018.03.27 ~ 2018.04.23 (15%)】											
2018.05.23	540,000,000 × (0.15 × (30 ÷ 365)) 【2018.04.24 ~ 2018.05.23 (15%)】											
2018.07.23	540,000,000 × (0.15 × (81 ÷ 365)) 【2018.06.24 ~ 2018.07.23 (15%)】											
2018.08.07	540,000,000 × (0.15 × (15 ÷ 365)) 【2018.07.24 ~ 2018.08.07 (15%)】											
2018.08.24	540,000,000 × (0.15 × (17 ÷ 365)) 【2018.08.08 ~ 2018.08.24 (15%)】											
2018.09.23	540,000,000 × (0.15 × (30 ÷ 365)) 【2018.08.25 ~ 2018.09.23 (15%)】											
2018.10.26	540,000,000 × (0.15 × (33 ÷ 365)) 【2018.09.24 ~ 2018.10.26 (15%)】											
2018.11.23	540,000,000 × (0.15 × (38 ÷ 365)) 【2018.10.27 ~ 2018.11.23 (15%)】											
2019.01.22	540,000,000 × (0.15 × (80 ÷ 365)) 【2018.11.24 ~ 2019.01.22 (15%)】											
2019.02.23	540,000,000 × (0.15 × (32 ÷ 365)) 【2019.01.23 ~ 2019.02.23 (15%)】											

1)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권리자가 피고 B를 상대로,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함께 피고 B와 이 사건 교회 사이에 체결되었던 공제약정(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)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건에서,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, 함께 체결되었던 공제약정도 무효라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(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03695 판결 및 위 판결의 파기환송심인 광주고등법원 2022. 10. 19. 선고 2022나22417 판결).